

기아·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(리콜)

- 총 4개사 9개 차종 54,412대 자발적 시정조치
-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)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기아(주), 폭스바겐그룹코리아(주), 스텔란티스 코리아(주),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에서 제작 또는 수입·판매한 총 9개 차종 54,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다.
- ① (기아) 레이 등 6개 차종, 48,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 - ② (폭스바겐) ID.4 82kWh, 4,815대는 차문결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, 이로 인해 특정 상황(정차 또는 15km/h 미만의 속도)에서 차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 - ③ (스텔란티스) 쥘 그랜드 체로키, 1,479대는 인터미디에트 샤프트(조향 휠과 조향 기어를 연결하는 중간 축) 조립불량으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 - ④ (포드) 레인저 와일드트랙, 93대는 앞바퀴 충격흡수장치(쇼크 업소버)의 용접 불량에 의한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,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.
-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(PC www.car.go.kr, 모바일 m.car.go.kr, 연락처 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박균성 (044-201-3843)
			사무관	박정근 (044-201-4996)



참 고

리콜 대상 자동차

기아(주)

대상 자동차(레이)	결함장치(계기판)
	

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레이	계기판	'22.08.31. ~ '23.02.13.	19,429 1(미판매)
셀토스		'22.07.19. ~ '23.02.14.	12,400
스포티지		'22.08.08. ~ '23.02.14.	8,220
스포티지 HEV		'22.08.08. ~ '23.02.10.	4,352
니로		'22.09.15. ~ '23.03.03.	3,027
K8		'22.08.09. ~ '23.03.02.	596
합 계			48,025

폭스바겐 그룹코리아(주)

대상 자동차(ID.4 82kWh)	결함장치(차문걸쇠장치)
	

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ID.4 82kWh	차문걸쇠장치	'22.04.14. ~ '23.05.05.	1,276 3,539(미판매)
합 계			4,815

□ 스텔란티스코리아(주)

대상 자동차(짚 그랜드 체로키)	결함장치(인터미디에트 샤프트)
	

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짚 그랜드 체로키	인터미디에트 샤프트	'21.06.25. ~ '23.01.30.	239 1,240(미판매)
합 계			1,479

□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

대상 자동차(레인저 와일드트랙)	결함장치(앞바퀴 충격흡수장치(쇼크 업소버))
	

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레인저 와일드트랙	앞바퀴 충격흡수장치 (쇼크 업소버)	'22.10.17. ~ '22.12.16.	73 20(미판매)
합 계			93

※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

※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*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

* 자동차제작자들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)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(☎ 080-200-6000), 폭스바겐그룹코리아(☎ 080-767,0089), 스텔란티스코리아(☎ 080-365-1200),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(유)(☎ 1600-6003)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